

|       |             |
|-------|-------------|
| 의안번호  | 2204394     |
| 의 퇴 인 | 김소희의원       |
| 회 답 일 | 2024.10.21. |
| 추계번호  | 24E4185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
| 1  | 안 제28조의5<br>(기후채권의 이자소득에<br>대한 과세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sup>1)</sup>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li> <li>기후채권의 이자소득세 면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산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 적용</li> </ul> |

주: 1.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2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을 가리킴.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이란 다음 (가)~(라)의 활동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가)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산업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전환 활동,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II. 미첨부 근거규정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28조의5<br>(기후채권의 이자소득에<br>대한 과세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기후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에 따라 소득세수 및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기 발행된 기후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규모, 향후 발행될 기후채권의 발행규모 및 수익률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서 정하는 활동, 탄소 다배출 산업 분야에서의 저탄소 전환 활동 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규모, 향후 채권 발행 규모 등에 대한 자료 필요
  - 기후채권은 녹색채권<sup>1)</sup>이나 ESG채권<sup>2)</sup>과 달리 국제기후채권기구(CBI, Climate Bonds Initiative)의 기후채권 조건<sup>3)</sup>을 충족해야 하는 채권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기후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sup>4)</sup>되며, 관련 통계도 부재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1)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2) 발행자금이 친환경 또는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지칭  
 3) 기후채권 기준(The Climate Bond Standards, CBS)은 채권 또는 기타 채무상품의 녹색채권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녹색채권 원칙과의 연계를 토대로 자금사용·추적·보고에 대한 명확한 의무사항, 저탄소 및 기후적응 프로젝트·자산의 적격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독립적 검증자 및 명확한 절차로 구성된 인증체계, 독립된 기후채권표준 이사회(Climate Bond Standard Board)에 의한 인증 등으로 체계로 구성(<https://sribond.krx.co.kr/contents/01/01010000/SRI01010000.jsp>)  
 4) 백광열(2021), “탄소배출권보다 더 강력한 기후채권”. 동아비즈니스리뷰(DBR) 327호(2021년 8월 Issue 2)

[참고]

[표] 기후채권과 ESG, 녹색채권의 비교

|                | ESG 채권                              | 녹색채권 (ICMA주도)                                                                                                | 기후채권(CBI 주도)                                                                        |
|----------------|-------------------------------------|--------------------------------------------------------------------------------------------------------------|-------------------------------------------------------------------------------------|
| 목적             | 환경, 사회, 조직 관리 및 경영에 관련되는 프로젝트 자본 공급 |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의 녹색채권 강령(Green Bond Principle, GBP)을 기반으로 녹색채권의 대중화 |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 Initiative, CBI)의 인증을 통한 기후채권 표준화 (Climate Bond Standards)    |
| 내용             | 불분명                                 | 아래 네 항목 중 하나만 적용되면 GBP 조건 충족<br>1. 채권 발행금 사용처 발표<br>2. 프로젝트의 녹색성 평가 발표<br>3. 채권 발행금 관리 발표<br>4. 사업 내용 보고     | 발행자가 CBI의 인증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범적 정의 및 규칙이 있음                                          |
| 프로젝트 범주        | 불분명                                 | 원칙적으로 모든 환경 프로젝트가 가능하며 사회사업도 포함                                                                              | 기후변화 방지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만 가능하며 사회사업을 포함하지 않음                                            |
| 독립적 객관적 제3자 인증 | 없음                                  | 추천을 하지만 강제성 없음                                                                                               | 반드시 필요함                                                                             |
| 기준 위반 시 불이익    | 없음                                  | 발행자는 GBP를 준수한다 발표하고 추후 위반을 해도 아무런 책임이나 제재가 없음                                                                | 국제기후채권 표준위원회 (Climate Bond Standards Board)는 기후채권 인증을 철회하고 이를 CBI 사이트와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함 |

자료: 백광열(2021), “탄소배출권보다 더 강력한 기후채권”. 동아비즈니스리뷰(DBR) 327호(2021년 8월 Issue 2)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세제분석1과  | 박지원 | 박연서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박지원 | 02-6788-4662 | jwpark1209@assembly.go.kr |